



# Brain

## 격변의 시대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전쟁

**요**즘처럼 지식재산권이 화두가 된 적이 없었  
다. 2011년 7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MS)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은 캐나다의 파  
산한 통신장비업체인 노텔의 특허 6천 건을 45  
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구글이 제시한 특허 인수  
가보다 무려 5배나 높은 금액에 낙찰되자 업계  
관련자들이 경악했다. 하지만, 2011년 9월 구글  
은 한술 더 떠서 무려 125억 달러에 모토로라를  
인수하였다. 인수한 모토로라의 1만7천 건의 특  
허를 확보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올해 초 구글이 모토로라를 레노버에 매각  
할 때도 특허는 넘기지 않고 그대로 수중에 뒀다.  
그야말로 지식재산권이 아니면 현재의 글로벌 기  
업들의 행보가 설명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위키피디아에 따르  
면, 지식 재산권은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i) 산업  
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  
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ii) 문화예술분  
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뉠 수 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보호 대상이 기술적 사상  
이라는 점에서 거의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실용  
신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특허권, 상표권, 디  
자인권, 저작권 분야 각각에서 눈여겨 볼 만한 사  
례를 살펴봄으로써, 지식재산을 통해 현재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투영해 보기로 하자.

### 특허를 돈으로 보는 '특허괴물' 활개

우선, 특허권을 매개로 본 세상은 어떤 모습일

까. 서두에 밝힌 애플, 구글 등의 사례도 특허가 돈  
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지  
만, 1990년대 말에 등장한 특허괴물(NPE)의 등장  
이야말로 특허를 돈으로 보는 세태를 극명하게 반  
영하고 있다. 특허괴물, 즉, NPE는 영어로 Non-  
Practicing Entity라 하여 말 그대로, 제품은 만들  
지 않고 주로 특허 소송을 통해 합의금이나 손해배  
상금으로 이익을 얻는 전형적인 회사를 말한다.

2000년대 들어 특허괴물의 행보가 본격적으  
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특허업계는 이와 관련  
된 많은 논란과 마주하고 있다. 인터디지탈사, 인  
터렉추얼벤처스사 등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수  
백 개의 특허괴물이 활동하고 있다. 페이턴트프  
리덤([www.patentfreedom.com](http://www.patentfreedom.com))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4년 당시 특허괴물에 의해 제기된 특  
허소송 건수가 634건, 2013년에는 3천716건으  
로 증가되었는 바, 그야말로 특허괴물의 위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인터디지탈사에 삼성전자가 지난해 지불한 로열  
티는 1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인터디지탈사의  
작년 매출액의 30%에 달하는 액수다.

이와 같은 특허괴물의 활개는 특허소송 남발이  
라는 역기능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특허권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급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이에 따라 기업 각각의 자생력 강화라는 순기능  
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특허라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  
다는 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기



글 정동준  
특허법인 수 대표변리사  
djjung@supatent.com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전기공  
학부를 졸업 후 제38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제일국제특  
허법률사무소, MPEG LA 특허  
pool 관련 클라이언트 대리, 대  
한변리사회 상임이사 등을 지  
냈으며 현재 서울지식재산센  
터 특허 전문위원, YTN 특허  
전문위원, 머니투데이필즈 등  
을 겸임하고 있다.

업, 중소기업도 좋은 특허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

### 기술특허 중시 관념 깬 디자인특허

디자인권을 매개로 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디자인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사례는 2012년 8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삼성과 애플의 소송 사례이다. 해당 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애플의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에게 10억 달러 가량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했는데, 10억 달러 중 상당부분이 디자인 특허에 대한 침해 배상액으로 산정되었다.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술특허도 아닌 디자인 특허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배상액이... 라는 생각을 했다. 위의 판결은 기술특허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던 우리나라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냈다.

재미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전 이후 디자인 출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이 2011년 4월에 시작되었고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10억 달러의 배상금 판결이 내려진 것이 2012년 8월이라는 시기를 생각해 볼 때, 삼성전자의 이름으로 한국에 출원된 디자인이 2011년에 831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1천347건, 2013년은 상반기에만 905건으로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2013년에 출원된 디자인은 아직 미공개 상태인 것이 있어 상반기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만약 2013년 전체의 추이를 산술적으로 추정해 본다면, 2013년에 삼성전자에 의해 출원된 디자인은 무려 1천800건에 달할 것이며, 이것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세라 말할 수 있다. 가장 크게 당한 삼성전자가 출선수범하여 디자인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영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중시 일변도의 기업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중국 'ipad' 상표권...애플 683억원 지급

상표권을 매개로 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상표의 중요성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사례는 중국의 'ipad' 사례이다. 대만 LCD 제조사인 프로뷰인터내셔널의 중국 내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ipad'라는 중국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 애플의 중국 내 'ipad'라는 표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걸었던 사안이다. 결국 2012년 애플이 683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끝에 해당 상표권 분쟁이 마무리되었다. 이와 같이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될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보호받기 위한 제도이다. 이름 하나 잘 지어서 큰 사업적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이름 하나 확보를 먼저 못해서 큰 고충을 겪을 수도 있다.

애플이 조만간 출시할 손목시계형 스마트 단말 아이워치

(iwatch). 앞선 ipad 사태 때문일까.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미리 아이워치 관련 상표를 깔아두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특허청에는 아이워치 관련 상표를 2013년 6월부터 다섯 건을 출원해 놓고 있고, 우선권 주장(외국에서 출원한 건을 바탕으로 우선권을 주장하면 해당 외국에서의 출원일로 소급시켜서 판단함)으로 인해 2012년 12월까지 출원일이 소급된다.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제품의 상표에 대해 2년 전부터 브랜드 네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출원된 상태를 보면, 'iWatch', 'iWATCH' 등과 같이 대문자, 소문자의 변화마저 하나하나 권리화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그런데 아이워치와 관련하여 한국에 상표출원을 한 기업은 애플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개인들도 2013년 이후 아이워치 관련 상표를 출원했으며, 그 건수는 13건에 이른다. 더구나 애플의 아이워치 관련 상품분류와 동일한 분류에 상표로서 출원한 건수도 6건이나 된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애플의 출원일보다 늦어 거절되거나 스스로 포기를 한 상태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애플의 상표출원일보다 매우 빠른 시점인 1997년에 'iWatch'라는 표장으로 상표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우리나라 개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상표는 애플의 아이워치 제품의 상품군과는 다른 상품군에 등록을 받았다는 한계가 있으며, 그마저도 2008년에 연장등록을 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었다. 만약 해당 개인이 다양한 상품군(가령, 애플의 아이워치 제품의 상품군)에 'iWatch'라는 상표를 확보해 두었다면, 그 개인은 앞서 살펴본 'ipad' 상표권에 버금가는 대박을 누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저작권 보호에 포함된 컴퓨터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저작권을 매개로 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나라 대법원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이 2009년 170건에서 2013년 3천10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파일 다운로드, 업로드 행위 등이 요즘 저작권 침해 사례로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도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14년 5월 미국 항소법원이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사안에서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에 따른 보호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담당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하는 작업들을 컴퓨터가 수행하도록 지시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자바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가 저작권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오라클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